

[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 지침]

I. 개요 및 목적

-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,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정리하여, 이를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, 궁극적으로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.

II. 운영·관리 기본원칙

-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제한 및 필요 최소한 촬영
- 임의조작·녹음 금지
-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·녹음 금지
-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
-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책임자 지정
-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 및 보관·파기 철저
-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위탁 시 관리·감독 철저
- 정보주체의 자기영상정보 열람권 보장
-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자체 점검

III. 세부내용

1.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

설치근거	설치목적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회사의 시설 안전 및 보호 • 고객, 임직원 및 모집인의 안전확보 • 범죄의 예방 수사 및 화재예방 등

2. 설치대수,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

(2013.06월 현재)

Site	설치대수	설치위치 및 촬영범위
신일빌딩 외	106	출입구 등 주요시설

3.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

구분	담당부서	담당자
관리책임	각 Site	각 Site 보안 담당자
관리총괄	GA/Property	부서장

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촬영시간	24시간(Motion basis)
보관기간	90일 이상
보관장소	각 Site 내 사무실 및 CCTV 통제실
처리방법	-개인영상정보의 열람, 파기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 -보관기간 만료 시 삭제(영구 복원불가)
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(절차) 및 장소

- 1)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, 해당 사항을 관리총괄부서에 요청한다.
- 2) 관리총괄부서에서는 요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부승인 절차를 진행한다.
- 3)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, 관리책임자를 통하여 해당 영상정보를 확인한다.
- 4)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, 영상정보는 해당 소재지 관리부서에서 직접 확인한다.
- 5) 영상정보 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리업체와 협업할 수 있다.
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- 1)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 열람 등, 일체의 관련 이슈가 발생한 경우,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관리총괄부서에 전달하여야 하며, 관리총괄부서는 내부승인 절차를 거쳐, 관련 사안을 조치한다.
- 2) 영상정보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요청자(정보주체) 본인의 영상정보에 한하며, 타인의 합법적인 행위에 대한 침해가 없어야 한다.

7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

- 1) 관리책임자 및 관리총괄부서의 사전 승인을 득 한자 외에는 영상정보처리기에 접근할 수 없다.
- 2)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에 대한 기술적, 관리적,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.
 - ✓ 기술적 조치: 암호화(저장장치에 대한 비밀번호 정기 변경 등)
 - ✓ 관리적 조치: 정기 및 수시점검 등
 - ✓ 물리적 조치: 사용자 및 저장장치 보관시설 통제 등

8. 기타

- 1) 영상정보처리기기(저장정보 포함) 손상 등의 책임은, 유발자 본인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귀속된다.
- 2) 본 운영·관리 지침이 법령 또는 보안기술 등의 변경에 따라 해당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, 관리총괄부서는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.
- 3)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,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①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 - ②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
 - ③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
- ④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
- ⑤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
- ⑥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
4) 개인영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나,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·제공이 가능하다.

<개인영상정보 이용·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>

- ①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
-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,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,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사유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